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03530(본소), 2021가단139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D’라는 상호로 상품종합중개, 산업용기계,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9. 12. 3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E의 폐고철 및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20. 7. 20. 피고와 사이에 E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포항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PosNEP(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1식에 관한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유의 제2조 매매목적물을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포항공장 내 이 사건 기계설비

제3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약서 작성 후 2020. 9. 10.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제3조 매매대금 지급시 제2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5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은 현 상태 그대로를 대상으로 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을’이 현장 답사 후 상황
을 유지하도록 한다. ‘을’은 작업 전에 답사 후와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여부를 ‘갑’에게 이
야기하도록 한다.

(중략)

※ 갑은 을의 공장 내 철거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철거작업은 갑에게 통보 후 2020년 7월 24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철거작업을 위하여 2020. 7. 2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E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의 철거는 하도급의 대상이 아니어서 F이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를 철거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바. 이후 F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한 후 철거된 기계설비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기계설비 중 일부는 2020. 8. 12.경 I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2020. 11. 20.경 F에게 재차
매도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20.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 중 휠터프레스 2대(이하 ‘이 사건 찰순이
2대’라고 한다)를 인도받았으나, 현재 위 기계는 분실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공장의 폐기물 철거용역을 E으로부터 도급받은 F만이 위 기계설비를 철거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설비를 철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한바,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0. 8. 4.경 이 사건 기계설비 중 이 사건 짚순이 2대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위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로 원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기계의 시가 상당액인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E 사이에 체결된 폐고철처리 용역단가계약에 따라 F은 E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기계설비 철거에 대한 하도급을 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서면 승인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수한 원고 역시 E의 하도급에 대한 서면 승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설비를 철거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설비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위 기계설비를 원도급인인 F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대부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짚순이 2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짚순이 2대가 분실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짚순이 1대의 시가가 8,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짚순이 2대의 시가 상당액인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